

전주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15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6.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9. 4. 접수 제75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1. 5.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은 2017. 12. 16.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7. 12. 19.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9. 9. 27. E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2019. 10. 15.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591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2. 'C은 원고에게 20,828,741원 및 그 중 14,242,945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2024. 2. 1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14,242,945원, 인수 전 이자 6,585,796원, 인수 후 이자 1,904,508원 합계 22,733,249원이다.

라. C의 아버지 F은 2013. 12. 24.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피고, H, C, I이 있다.

마.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의 상속인들은 2023. 6. 26.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2024. 9. 4.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3. 9. 4. 접수 제7596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기준 14,242,945원을 비롯하여 원금 기준 49,83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단법인

J,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피보전권리가 된다.
-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아파트 중 C 상속분 2/11 지분에 관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노미정

별지